

#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	-----

제출년월일 : 1992. 9.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사회교육진흥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면제대상 :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안 제2조)
- 나. 면제세목 : 취득세 및 등록세 (안 제2조)

##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 도서관진흥법 제3조
- 사회교육법 제23조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 칙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

